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451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4.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53,980,4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53,980,4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6. C에게 43,000,000원을 이자율 연 17.5%, 지연배상금율 약정이자율+3%,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21. 5. 20.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대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22. 7. 6.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원리금 채무는 원금 42,285,820원, 이자 11,694,593원의 합계 53,980,413원이 남아 있다.

라. 피고는 C와 2015. 6. 25.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2020. 12. 15.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드단13189호로 이혼등 소를 제기하였다. C와 피고 사이에 2021. 1. 14. 조정이 성립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와 C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등기비용은 C가 부담).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즉시 2015. 6.

8. 접수 제33272호(채권최고액 84,000,000원), 2015. 6. 16. 접수 제35146호(채권최고액 36,000,000원), 2016. 3. 23. 접수 제20390호(채권최고액 1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못하여 C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C에게 즉시 그 손해상당액을 배상한다.

(중략)

4.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는 2021.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4.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일인 2021. 1. 14.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피고와 혼인 전 분양받은 재산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순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을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혼인기간 중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C와 피고 간의 공동재산은 D은행에 변제된 23,850,368원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위 변제된 돈의 1/2에 해당하는 11,925,184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21.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인 295,000,000원에서 D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3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3,000,000원과 2022. 7. 6. 기준으로 C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53,980,413원 중 낮은 금액인 53,980,4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980,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채무초과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나)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던 사실, C는 당시 D은행 및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소극재산만 존재하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조정이 성립한 2021. 1. 14.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의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90,000,000원

② C의 소극재산

-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102,143,178원1) (= 64,662,517원 + 27,906,041원 + 9,574,620원)

-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42,097,442원2)

③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C의 순재산

위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면 그 순재산은 145,759,380원(= 290,000,000원 - 102,143,178원 - 42,097,442원)이 된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와 C의 순재산은 145,759,38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187,756,722원(= 290,000,000원 -

102,143,1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자녀들 양육비까지 참작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고와 C가 5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 ②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피고와 혼인 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혼인 이후 피고와 함께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는 이혼으로 인해 이혼 당시 만3, 4세의 자녀 둘을 양육하게 되었음에도 C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 ⑤ 피고와 C의 이혼 무렵 순재산은 145,759,380원이다.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보면, 피고의 몫은 72,879,690원(= 145,759,380원 × 50%)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자녀 둘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16년여 동안 홀로 양육해야 하는데, C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1인당 월 631,000원(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소 금액)씩으로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의 양육비가 242,304,000원(= 631,000원 × 2 × 12개월 × 16년)에 이른다. 이에 위 72,879,690원을 더하면 315,183,69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187,756,722원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친다.
- ⑥ 피고의 아들 E은 2020. 11.경 상세불명 언어장애 판정을 받아 언어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26층 호 58.790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진주시 대 64994.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64994분의37.0513

끝.

- 1) 2021. 2. 2. 기준 채무액인바, 그 무렵인 2021. 1. 14.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 2) 2021. 1. 5. 기준 채무액인바, 그 무렵인 2021. 1. 14.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